

<사례 1>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물품 통지

건강보조식품 반품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유통(주)(051-000-0000)
-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 1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란(860410-*****) (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11. 27.
- 구입물품 : 스쿠알렌 아이민 바이오
- 계약금액 : 500,000원(자사할부 12개월)

▶ 사유

'04.11.27. 청주 주네쓰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귀사의 영업사원이 설문에 응해 주면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권유하여 본인은 이에 응하였음.

설문을 마친후 위 영업사원이 스쿠알렌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복용하여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급 처리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였음.

미성년자인 본인은 이건 건강보조식품 구입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 왔으나 동년 12월말 귀사로부터 지로용지가 배달되어 부모님이 동 식품 구입 사실을 알게 되었음.

본인의 부모님은 이건 건강보조식품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고 너무 고가이므로 구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귀사에서는 동 식품을 반품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

2004년 12월 30일

발신자 : 홍 길 순

화장품 반품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문화사 (02-809-8978)
- 주 소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986-4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 계약자의 모 : 김종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5년 2월초
- 구입물품 : 화장품(스크램블)
- 계약금액 : 160,000원

▶ 사유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3학년인 본인의 딸 홍길순(1988년생)은 '04.2월 청주시 성안길에서 귀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무료로 주며 추후 월 4,000원을 납부하면 화장품 샘플을 보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동 화장품 세트를 인수해 왔으나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 왔음.

당초 설명과 달리 귀사에서는 이건 화장품 대금이 16만원이라고 납부하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독촉 과정에서 최근 본인과 가족들이 화장품 구입 사실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본인의 이건 화장품 구입 당시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동 화장품이 본인의 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바 귀사에서는 동 제품을 조속히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05년 5월 19일
발신자 : 김 종 숙

<사례 2>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영어잡지 구독 취소

영어 잡지 구독 계약 취소 통지

▶ 수 신

- 업체명 : ABC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 물품 구입 내역

- 결제일(금액) : 2004.6.2.(573,200원 12개월 할부)
- 카드 번호 : 0000-0000-0000-0000
- 계약물품 : 영어잡지(뉴스위크)

▶ 사 유

- '04.6.2. 귀사 직원 '정현경' 이 전화를 해 본인의 후배라고 하며 영어잡지 구독을 권유하여 160회분을 구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 주었음.
- 본인은 추후 알아 보니 위 영업사원이 본인의 후배가 아니고 이건 영어잡지가 본인이 학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 보니 동 교재 대금이 57만원으로 결제되어 있는 바 경제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곤란하여 구독 취소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음.
-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이건 영어잡지 구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교재 구입 계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4년 6월 22일

홍길동

영어잡지 관련 신용카드 청구 취소 통지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
- 주 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 연락처 : 010-0000-0000

▶ 물품 구입 내역

- 구입업체 : ABC사(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 결제액 : 573,200원 (6.2. 12개월 할부)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0000-0000

▶ 사유

- 본인은 '04.6.2. 귀사의 가맹점인 ABC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영어잡지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귀사의 신용카드를 사용, 위와 같이 결제함.
- 본인은 위 직원의 설명이 당초 설명과 차이가 있고 구입 대금이 과도하여 가맹점에 구두 및 서면으로 별첨과 같이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잡지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영어잡지 계약 취소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4년 6월 22일

홍길동

<사례 3> 일방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정기 간행물 취소

정기간행물 구독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교육연구소(02-0000-00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5. 7.
- 계약금액 : 496,000원(OO카드 12개월 분납)
- 계약물품 : 정기간행물

▶ 사유

'04.5.7. 귀사의 영업사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 와 무료로 MP3를 보내 준다고 하여 단지 이를 수락하였으나 얼마후 신용카드사로부터 49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음.

귀사에 전화로 문의하니 2년전부터 구독해 오던 정기간행물(영어잡지)에 대한 연장 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본인은 동 간행물을 추가 구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음.

본인은 이건 정기간행물을 추가로 구독할 의사가 없으며 더구나 이와 관련된 대금 결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속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4년 5월 11일

발신자 : 홍길순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고객상담팀(02-0000-00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발 신

- 계약자 : 홍 길 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5. 7.
- 계약금액 : 496,000원(신용카드 12개월 분납)
- 신용카드번호 : 9410-2126-4950-3519
- 가맹점 : OO교육연구소

▶ 사유

'04.5.7. OO방송교육연구소 직원이 전화를 해 와 무료로 MP3를 보내 준다고 하여 수락하였으나 전화를 끊고 나니 귀사로부터 본인의 신용카드로 496,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

본인은 위 가맹점에 전화로 문의하니 정기간행물 연장 계약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동 간행물을 추가 구독 의사가 없음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간행물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정기간행물 계약 취소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4년 5월 11일

발신자 : 홍 길 순

<사례 4> 충동 구매한 할인회원권 취소 통지

할인회원권 계약 취소 통지

▶ 수 신

- 업체명 : (주)OO(1588-0000)
- 주 소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05. 3. 29
- 계약금액(결제방법) : 596,000원(OO카드 6개월 할부 결제)
- 계약물품 : 할인회원권

▶ 사 유

- '04.3월 귀사의 직원이 전화를 해 와 전화요금 등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여 본인은 집 주소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음.
- 며칠후 귀사에서 책자를 보내 와 살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즉각 이를 반송하였고(현대택배) 이후 귀사 직원으로부터 취소해 주겠으니 전화 사용료 3만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들어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신용카드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음.
- 본인은 이견 할인회원권 가입 후 즉각 사은품을 반납하고 취소 의사를 통보하며 전화 사용료 3만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귀사에서 동 회원권 계약을 조속히 취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2005년 5월 19일

홍길동

할인회원권 관련 신용카드 매출 취소 통보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05. 3. 29
- 계약금액(결제방법) : 596,000원(OO카드 6개월 할부 결제)
- 계약물품 : 할인회원권
- 가맹점 : (주)OO(서울 중구 회현동 1가)

▶ 사 유

- '04.3월 귀사 가맹점 (주)OO 직원이 전화를 해 와 전화요금 등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여 본인은 집 주소와 귀사로 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음.
- 며칠후 책자가 배송되어 살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즉각 이를 반송하며(현대택배) 이후 위 가맹점 직원으로부터 전화 사용료 3만원을 지급하고 취소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으나 신용카드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재차 통보하였음.
- 이건 할인회원권 계약이 취소되었던 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사에서는 이건 할일회원권과 관련된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할인회원권 계약 취소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5년 5월 19일

홍길동

<사례 5> 당초 설명과 달리 대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할인회원권 취소 통지

할인 회원권 취소 통지

▶ 수 신

- 업체명 : OO글로벌 클럽 (032-862-4746)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1. 7.
- 구입물품 : 할인회원권
- 계약금액 : 598,000원(OO카드 10개월 할부)

▶ 사유

‘04.1.월초 귀사의 직원이 전화를 해 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 레저 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하여 주고 특히, 대출을 알선해 주며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입비를 전액 환급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며 대금 598,000원은 OO신용카드를 사용, 10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동년 1월 귀사에 대출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수차례 송부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할인회원권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4년 3월 3일

발신자 : 홍길동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02-0000-0000)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1. 7.
- 구입물품 : 할인회원권
- 계약금액 : 598,000원(OO카드 10개월 할부)
- 결제업체 : PG 쇼핑몰(강남구 논현동 203 신천빌딩 5층)
드림피그(가맹점명)
- 카드번호 : 0000-0000-0000-0000

▶ 사유

본인은 '04.1.7. 귀사의 가맹점 OO글로벌클럽 직원이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설명을 하여 할인회원권에 가입하며 대금 598,000원은 귀사의 신용카드를 사용, 10개월 할부로 결제함.

OO글로벌클럽에서 약속한 대출이 이행되지 않아 본인은 동 할인회원권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건 할인회원권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에서 동 회원권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할인회원권 계약 취소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4년 3월 3일

발신자 : 김 환 근

<사례 6> 할부로 구입한 의류 반품 통지

의류 반품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000(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5. 2. 19
- 구입물품 : 자켓
- 계약금액 : 210,000(00카드 3개월 할부)

▶ 사유

본인은 '05.2.19. 귀사 매장에서 자켓을 21만원에 구입하며 대금은 00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집에 돌아와 이견 의류를 다시 살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동년 2.21. 귀사를 방문,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견 의류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의류를 반품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5년 2월 22일

발신자 : 홍 길 순

의류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사(02-0000-0000)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5. 2. 19
- 구입물품 : 자켓
- 계약금액 : 210,000(OO카드 3개월 할부)
- 가맹점 : OOO(043-252-088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0000-0000

▶ 사유

본인은 '05.2.19. 귀사 가맹점인 "OOO"에서 자켓을 21만원에 구입하며 대금은 귀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이건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년 2.21. 위 가맹점을 방문,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별첨과 같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음.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류에 의거한 청약철회 절차를 밟았으므로 귀사에서는 이건 의류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의류 반품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5년 2월 22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7>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닥스(02-000-0000)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7. 24
- 구입물품 : 네비게이션
- 결제금액 : 1,118,800원(OO카드 일시불 결제)

▶ 사유

‘04.7.24. 오송농협 쌍청리 분소 인근에서 귀사의 영업사원 ‘박동진’ 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 대신 월간 통신료로 33,300원씩 3년간 납부하면 보험사와 협의, 5년간 종합보험료 납입금액의 20%를 환급해 주어 구입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차 3대까지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아버지(임춘식)와 함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음.

위 영업사원이 이건 네비게이션을 본인의 차량(옵티마)에 장착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단 3년간 통신료를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LG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본인과 상의없이 일시불로 결제함)

추후 귀사에 이건 네비게이션 계약 내용을 문의하여 본 바 본인이 결제한 대금은 동 물품 대금이라고 하며 또한, 종합보험료 납부액중 20%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등 위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귀사 영업사원의 허위 선전으로 이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귀사에서는 조속히 동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04년 7월 28일

발신자 : 홍길순

신용카드 매출 취소 요청서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02-6252-6108)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7. 24
- 구입물품 : 네비게이션
- 결제금액 : 1,118,800원(OO카드 일시불 결제)
- 가 맹 점 : OO닥스(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0000-000

▶ 사유

본인은 '04.7.24. 귀사 가맹점 OO닥스 영업사원으로부터 종합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며 3년간 통신료 1,118,800원을 귀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추후 확인하여 보니 위 가맹점의 설명이 허위인 것을 알게 되어 별첨과 같이 이견 네비게이션 구입 계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동 물품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보한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4년 7월 28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8>

효능없는 연료절감기 반품 통지

▶ 수 신

- 업체명 : OO정보 (031-000-0000)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0-0000-0000)
- 주 소 : 충남 연기군 봉암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5. 6. 15.
- 구입물품 : 연료절감기
- 물품가액 : 598,000원(OO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 사 유

'05.6.15. 연기군 서면 봉암농협 앞에서 귀사의 직원이 차량을 점검해 준다고 하여 본 네트를 열어 준 바 무료라고 하며 1개월 사용해 본 후 주변에 홍보만 해 달라고 하며 엔진오일 코팅제를 넣었고 잠시후 다른 직원이 와서 연료를 30% 정도 절감해 준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시켰음.

그후 귀사의 담당 부장이라는 자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12만원 상당의 엔진오일코팅제는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연료절감기 대금이 598,000원이라고 하며, 추후 10년간 종합보험료의 10%를 지원해 주므로 실제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고 하며 위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인은 당초 무료라는 설명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하였음.

그러자 위 영업사원들이 본인의 집까지 와서 대금 납부를 강요하며 본인은 불가피하게 누나 홍길순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음.

본인은 귀사의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이건 물품을 장착한 후 대금 결제를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누나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고 이건 연료절감기에 대한 효능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는 동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05년 6월 16일

발신자 : 홍길동

연료절감기 신용카드 대금 청구 취소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02-0000-0000)
- 주 소 : 서울 중구 충인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충남 연기군 봉암리 ☎010-0000-0000)
- 카드소유자 : 홍길순(카드번호 0000-0000-0000-0000:011-0000-0000)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5. 6. 15.
- 구입물품 : 연료절감기
- 물품가액 : 598,000원(OO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 가맹점 : OO정보(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41)

▶ 사 유

'05.6.15. 연기군 서면 봉암농협 앞에서 귀사의 가맹점 OO정보 직원이 본인의 동생 '홍길동'에게 무료로 차량을 점검해 준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엔진오일 코팅제를 넣었고 다른 직원이 연료를 30%정도 절감해 준다고 하며 연료절감기를 장착시켰음.

그후 위 가맹점의 다른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12만원 상당의 엔진오일코팅제는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연료절감기 대금 598,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본인의 동생은 당초 무료라는 설명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하였음.

위 가맹점 직원들이 본인의 집까지 와서 대금 납부를 강요하며 본인은 불가피하게 귀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음.

본인의 동생은 위 가맹점 직원으로부터 이견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후 대금 결제를 강요당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고 또한, 동 연료절감기에 대한 효능을 신뢰할 수 없어 별첨과 같이 반품 의사를 통지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제품 관련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통지한 연료절감기 반품 요청서 사본 1부 .끝.

2005년 6월 16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9>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가스레인지 반품 통지

가스레인지 반품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상사 (02-000-0000)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6. 4.
- 구입물품 : 가스레인지
- 계약액 : 159,000원(4회 분납)

▶ 사유

‘04.6.4. 귀사 영업사원 ‘안철’ 이 방문, 시청에서 가스 점검차 나왔다고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샌다고 하며 다른 가스레인지로 교환하라고 권유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함.

추후 알아 보니 귀사의 직원은 시청과는 무관하고 가스를 점검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사용해 오던 가스레인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귀사에서 공급한 가스레인지는 2구 제품으로 시중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고가인 것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허위설명으로 이진 가스레인지를 구입하였으므로 귀사에서는 조속히 동 제품을 회수해 가고 당초 설치되었던 가스레인지를 재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4년 6월 11일

홍길동

<사례 10>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 반품 통지

화장품 반품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화장품(080-000-0000)
- 주 소 : 경남 창원시 소답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순(016-000-0000)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04. 7월말
- 구입물품 : 기초 화장품 세트
- 구입금액 : 410,000원(자사 10개월 할부, 계약금 1만원 지급)

▶ 사유

‘04.7월 중순 귀사의 영업사원이 방문, 화장품 세트 구입을 권유하며 트러블 발생될 경우 언제라도 반품 처리된다는 설명을 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음.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트러블이 발생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사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지내고 있던 중 8.20경 대금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를 받음.

귀사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본인은 이건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설명하고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반품기한(구입후 14일)이 경과되었고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반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본인은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동 화장품 구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품 요구가 지연된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동 화장품을 조속히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04년 8월 30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11> 부도 발생된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 취소 통지
잔여 학원 수강료 반환 요구건

▶ 수 신

- 업체명 : OO문화원(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1-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05. 4. 1
- 계약내용 : 중국어 3개월 강좌
- 계약금액 및 결제방법 : 250,000원(OO카드 3개월 분납)

▶ 사 유

- '05.4.1. 귀사를 방문, 중국어 강좌를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25만원을 OO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05.4월 1개월간 정상적으로 이견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였으나 동년 5.1. 당분간 휴강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표자가 부도로 행방불명되어 동 학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알게 되었음.
- 본인은 3개월간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개월밖에 수강하지 못하였으므로 귀사에서는 잔여 수강료를 즉각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5. 5. 24.
홍길동

학원수강료 신용카드 할부금 취소 통보

▶ 수 신

- 업체명 : OO카드 항변권 담당자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1-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05. 4. 1
- 계약내용 : 중국어 3개월 강좌
- 계약금액 및 결제방법 : 250,000원(OO카드 3개월 분납))
- 가맹점 : OO문화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 신용카드번호 : 0000-0000-0000-0000

▶ 사 유

- 본인은 '05.4.1. 귀사의 가맹점인 OO문화원과 중국어 강좌를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25만원을 귀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본인은 '05.4월 1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중국어 수강을 받았으나 동년 5.1. 당분간 휴강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위 가맹점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한 것을 알게 되었음.
- 가맹점의 부도로 이견 중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에서는 동 강좌 수강료와 관련된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첨부 : 가맹점에 발송한 잔여수강료 반환 통지서 사본 1부. 끝.

2005. 5. 23.

홍길동

<사례 12>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 업체명 : OO신용정보(주)(051-000-0000)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발 신

- 계약자 : 홍길동(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사 유

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던 '91년경 충남 홍천에 실습을 갔다가 판매업자로부터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스쿠알렌을 구입하였음.

이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여 보니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업자는 이미 복용하였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동 식품을 집에 보관해 놓았음.

이후 판매업자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귀사에서 전화를 해 와 이건 건강보조식품 대금과 연체금으로 1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바 본인은 동 식품의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취소 의사를 하였으므로 14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귀사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은 귀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차후 대금 독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05년 3월 30일

발신자 : 홍길동